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중 “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을 “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에 제5호를, 동조에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월드컵경기장

⑤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한다.

별표 1의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동대문씨름장” 및 “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명칭	시설명	기능	위치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
	보조경기 장	축구, 각종행사	“

별표 2 중 “체육경기”란의 명칭을 “체육행사”로 하고,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배구장(씨름장)” 및 “역도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운동장별	체육행사	체육이외행사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230,000
	보조경기장	70,000

별표 3의 “시설별”란 중 “씨름장” 및 “수영장(실외)·(대인)·(소인)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6 “음향시설”의 산출기준란 중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을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
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
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

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
서 추천한 2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
함하여”를 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
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
감이 추천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
을 포함하여”로 한다

안 제35조 제3항 중

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”를 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
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
연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
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
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
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
진흥위원회(이하 “문예진흥위원회”라 한다)
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
항을 심의·자문한다

-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
계획에 관한 사항
-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
의 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
- 기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회의안건에
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
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
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
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자